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26호
2024. 12. 4.(수)



목 차

◆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

[입법예고]

제2024-389호	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	2
제2024-395호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	11

서울특별시교육청**[입법예고]****◆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-389호****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12월 4일

서울특별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- 학생과 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 내 분장사무 조정

2. 주요내용

- 가.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관, 행정관리담당관, 참여복지담당관, 노사협력담당관 및 교육협력담당관을 두고, 일부 업무를 신설·조정함 (안 제8조)
- 나. 교육정책국에 창의미래교육과, 유아교육과, 초등교육과, 중등교육과 및 학생역량증진과를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·조정함 (안 제9조)
- 다.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, 민주시민교육과, 진로직업교육과,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및 특수교육과를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·조정함 (안 제10조)

3. 의견 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의견 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,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다. 제출방법

○ 우편: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,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 (우 03178)

○ 이메일: bmw7289@sen.go.kr (※ 문의: 전화 02-2282-8643)

4. 개정규칙안: 붙임 참조

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참여협력담당관”을 “참여복지담당관”으로, “대외협력담당관”을 “교육협력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참여협력담당관”을 “참여복지담당관”으로, “대외협력담당관”을 “교육협력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획·운영

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참여협력담당관”을 “참여복지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3호를 제3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

24.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·점검·지도 업무

25. 대안교육기관 등록·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
26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업무

27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

28.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

29. 탈북학생교육 관련 업무

제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외협력담당관”을 “교육협력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학부모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

10.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

11.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

12.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

제9조제1항 중 “디지털·혁신미래교육과”를 “창의미래교육과”로, “교수학습·기초학력지원과”를 “학생역량증진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디지털·혁신미래교육과장”을 “창의미래교육과장”으로, “교수학습·기초학력지원과장”을 “학생역량증진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디지털·혁신미래교육과장”을 “창의미래교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수학습·기초학력지원과장”을 “학생역량증진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혁신미래교육 정책·기획

2. 교육공무원 혁신역량 정책·기획

3. 혁신학교 지정·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

4.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기획 및 연수 지원

5.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

제10조제1항 중 “민주시민생활교육과”를 “민주시민교육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”을 각각 “민주시민교육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“통일교육”을 “통일·독도·역사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기획조정실)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관, 행정관리 담당관, <u>참여협력담당관</u> , 노사협력 담당관 및 <u>대외협력담당관</u> 을 둔다.	제8조(기획조정실) ① ----- ----- ----- <u>참여복지담당관</u> ----- ----- <u>교육협력담당관</u> -----.
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 는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, 예산담당 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 관으로, <u>참여협력담당관</u> 은 지방서 기관 또는 장학관으로, 노사협력 담당관 및 <u>대외협력담당관</u> 은 지방 서기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참여복지담당관</u> ----- ----- -- <u>교육협력담당관</u> ----- -----.
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14. (생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5. <u>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획</u> <u>· 운영</u>
15. (생략)	16. (현행 제15호와 같음)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참여협력담당관</u>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	⑥ <u>참여복지담당관</u>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학부모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</u> <u>항</u>	<삭제>

9.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

10.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

11.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

12. ~ 2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23. (생략)

⑦ (생략)

⑧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12. ~ 22. (현행과 같음)

23.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

24.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·점검·지도 업무

25. 대안교육기관 등록·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
26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업무

27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

28.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

29. 탈북학생교육 관련 업무

30. (현행 제23호와 같음)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교육협력담당관-----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학부모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

10.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

11.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

12.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

제9조(교육정책국) ① 교육정책국에
디지털·혁신미래교육과, 유아교
육과, 초등교육과, 중등교육과 및
교수학습·기초학력지원과를 둔
다.

② 국장, 디지털·혁신미래교육과
장, 유아교육과장, 초등교육과장,
중등교육과장 및 교수학습·기초
학력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
다.

③ 디지털·혁신미래교육과장은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혁신미래교육 정책·기획
2. 교육공무원 혁신역량 정책·기
획
3. 혁신학교 지정·운영 지원 및
성과 평가
4.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획
·운영
5.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기획
및 연수 지원
6.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
7. ~ 47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⑦ 교수학습·기초학력지원과장은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9조(교육정책국) ① -----

창의미래교육과-----

----- 학생
역량증진과-----.

② --- 창의미래교육과장-----

----- 학생역량증진과장-----
-----.

③ 창의미래교육과장-----

-----.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7. ~ 47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학생역량증진과장-----
-----.

1. 혁신미래교육 정책·기획

2. 교육공무원 혁신역량 정책·기획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. ~ 30. (생 략)

제10조(평생진로교육국)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, 민주시민생활교육과, 진로직업교육과, 체육건강예술포육과 및 특수교육과를 둔다.

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,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및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체육건강예술포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, 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.

③ (생 략)

④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3. (생 략)

14. 통일교육 관련 업무

15. ~ 18. (생 략)

19.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

20.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·점검

3. 혁신학교 지정·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

4.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기획 및 연수 지원

5.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

6. ~ 35. (현행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)

제10조(평생진로교육국) ① -----

----- 민주시민교육과-----

--.

② -----

----- 민주시민교육과장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민주시민교육과장-----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통일·독도·역사교육 -----

15. ~ 18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· 지도 업무	
<u>21. 대안교육기관 등록·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<u>2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업무</u>	<삭 제>
<u>2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</u>	<삭 제>
24. ~ 27. (생략)	24. ~ 27. (현행과 같음)
<u>28.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</u>	<삭 제>
<u>29. 탈북학생교육 관련 업무</u>	<삭 제>
30. ~ 34. (생략)	30. ~ 34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

성 명 : (인) (단체인 경우) 단체명 : 대표자 성 명 :
주 소 : 전화번호 :

개정안	수정요구안	사 유
제0조(00)	제0조(00)	○ —

2024년 11월 일

◆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-395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12월 4일

서울특별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- 가. 2025. 1. 1. 개정 예정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2025. 1. 1.자 조직개편 등과 관련한 지방공무원의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
- 나. 2025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반영
- 다. 일반직공무원 정·현원 불일치 해소 및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에 따라 정원 일부 조정
- 라. 그 밖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직·특정직공무원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 조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
 - 본청(직속기관 포함)
 - : 5급 (증)1명, 6급 (증)9명, 7급 (증)5명, 8급 (증)1명, 계 (증)16명
 - 교육지원청
 - : 6급 (증)3명, 7급 (증)3명, 계 (증)6명
 - 각급학교
 - : 6급 (증)39명, 8급 (감)61명, 계 (감)22명
- 나. 일반직공무원 직렬별·직급별 정원 조정
 - 5급: 사서 5급 (증)1명, 계 (증)1명
 - 6급: 교육행정 6급 (증)31명, 전산 6급 (증)1명, 사서 6급 (감)1명, 공업 6급 (증)2명, 시설 6급 (증)1명, 시설관리 6급 (증)18명, 열관리운영 6급 (감)1명, 계 (증)51명
 - 7급: 교육행정 7급 (증)82명, 전산 7급 (증)2명, 공업 7급 (증)1명, 시설 7급 (감)1명, 시설관리 7급 (감)8명, 사무운영 7급 (감)68명, 계 (증)8명
 - 8급: 교육행정 8급 (감)16명, 보건 8급 (증)1명, 시설관리 8급 (감)45명, 계 (감)60명

3. 의견 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다. 제출방법

- 우편: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,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(우 03178)
- 이메일: jeunsan@sen.go.kr(※ 전화문의: 02-2282-8644)

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구 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7,722	6	1,842	1,372	4,502
정무직	정무직 계	1	—	1	—	—
	교육감	1	—	1	—	—
일반직	일반직 계	7,125	6	1,560	1,057	4,502
	2·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	1	—	1	—	—
	3급 부이사관	9	—	9	—	—
	3·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3	—	3	—	—
	4급	소계	—	33	11	—
		서기관	—	29	10	—
		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—	4	1	—
	4·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	7	—	7	—	—
	5급	소계	1	152	55	131
		교육행정	1	89	41	117
		행정	—	6	—	—
		사서	—	31	—	—
		보건	—	1	—	—
		교육행정 또는 행정	—	4	—	6
		교육행정 또는 사서	—	6	—	—
		교육행정 또는 보건	—	3	3	2
		교육행정 또는 시설	—	2	—	—
		공업 또는 시설	—	9	11	—
		교육행정·공업 또는 시설	—	—	—	6
		교육행정·보건 또는 식품위생	—	1	—	—
	6급	소계	5	528	289	1,187
		교육행정	5	229	165	884
		전산	—	30	22	—
		사서	—	119	11	—
		공업	—	12	—	2
		녹지	—	1	—	—
		보건	—	9	10	—
		식품위생	—	4	—	2

구 분	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일 반 직		간호	5	—	5	—	—
		시설	42	—	19	23	—
		방송통신	1	—	1	—	—
		시설관리	305	—	43	11	251
		운전	5	—	2	—	3
		통신운영	1	—	1	—	—
		전기운영	10	—	4	—	6
	6급	열관리운영	21	—	11	—	10
		사무운영	61	—	24	12	25
	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3	—	3	—	—
		교육행정 또는 전산	—	—	—	—	—
		교육행정 또는 보건	1	—	—	—	1
		방호 또는 시설관리	3	—	3	—	—
		공업 또는 시설	30	—	4	26	—
		보건 또는 식품위생	3	—	3	—	—
		교육행정·공업 또는 시설	3	—	—	—	3
		교육행정·보건 또는 식품위생	10	—	1	9	—
	7급	소계	2,692	—	586	469	1,637
		교육행정	1,720	—	257	325	1,138
		전산	60	—	49	11	—
		사서	173	—	173	—	—
		공업	21	—	9	12	—
		녹지	1	—	1	—	—
		보건	31	—	17	14	—
		간호	5	—	5	—	—
		시설	48	—	19	29	—
		시설관리	514	—	21	15	478
		운전	12	—	3	6	3
		통신운영	1	—	1	—	—
		전기운영	—	—	—	—	—
		열관리운영	—	—	—	—	—
		사무운영	72	—	21	33	18
		교육행정 또는 시설	1	—	1	—	—
	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1	—	1	—	—
		공업 또는 시설	18	—	3	15	—

구 분	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		보건 또는 식품위생	2	—	2	—	—
		방호 또는 시설관리	4	—	2	2	—
		교육행정·보건 또는 식품위생	8	—	1	7	—
	8급	소계	2,000	—	231	222	1,547
		교육행정	1,273	—	67	118	1,088
		전산	24	—	13	11	—
		사서	85	—	85	—	—
		공업	14	—	2	12	—
		보건	22	—	5	17	—
		시설	50	—	8	42	—
		시설관리	502	—	43	6	453
		운전	12	—	1	5	6
		전기운영	—	—	—	—	—
		열관리운영	—	—	—	—	—
		사무운영	1	—	1	—	—
일 반 직	8급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5	—	5	—	—
		공업 또는 시설	11	—	—	11	—
		보건 또는 간호	1	—	1	—	—
		방호 또는 시설관리	—	—	—	—	—
	9급	소계	—	—	—	—	—
		시설관리	—	—	—	—	—
		운전	—	—	—	—	—
		전기운영	—	—	—	—	—
		열관리운영	—	—	—	—	—
		사무운영	—	—	—	—	—
		방호 또는 시설관리	—	—	—	—	—
	전문 경력관	소계	7	—	7	—	—
		가군	1	—	1	—	—
		비상계획관	1	—	1	—	—
		나군	2	—	2	—	—
		교육영상물제작PD	1	—	1	—	—

구 분	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		평생교육사	—	—	—	—	—
		학생수련지도사	1	—	1	—	—
		다군	4	—	4	—	—
		속기사	—	—	—	—	—
		학생수련지도사	4	—	4	—	—
	연구사	소계	14	—	3	11	—
		학예연구	1	—	1	—	—
		기록연구	13	—	2	11	—
별 정 직	별정직 계		8	—	8	—	—
	4급 상당(비서)		1	—	1	—	—
	5급 상당(비서)		4	—	4	—	—
	6급 상당(비서)		3	—	3	—	—
특 정 직	특정직 계		588	—	273	315	—
	장학관 · 교육 연구관	소계	125	—	69	56	—
		3급 상당	17	—	6	11	—
		4급 상당	34	—	23	11	—
		5급 상당	74	—	40	34	—
	장학사 · 교육 연구사		463	—	204	259	—

신 · 구 대비표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【별표】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【별표】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
구 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각부·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	구 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각부·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7,722	6	1,826	1,366	4,524	총계		7,722	6	1,842	1,372	4,502
정 무 직	정무직 계	1	-	1	-	-	정 무 직	정무직 계	1	-	1	-	-
	교육감	1	-	1	-	-		교육감	1	-	1	-	-
일 반 직	일반직 계	7,125	6	1,544	1,051	4,524	일 반 직	일반직 계	7,125	6	1,560	1,057	4,502
	2·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	1	-	1	-	-		2·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	1	-	1	-	-
	3급 부이사관	9	-	9	-	-		3급 부이사관	9	-	9	-	-
	3·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3	-	3	-	-		3·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3	-	3	-	-
	4급 소계	44	-	33	11	-		4급 소계	44	-	33	11	-
	4급 서기관	39	-	29	10	-		4급 서기관	39	-	29	10	-
	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5	-	4	1	-		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5	-	4	1	-
	4·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	7	-	7	-	-		4·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	7	-	7	-	-
	5급 소계	338	1	151	55	131		5급 소계	339	1	152	55	131
	5급 교육행정	248	1	89	41	117		5급 교육행정	248	1	89	41	117
	5급 행정	6	-	6	-	-		5급 행정	6	-	6	-	-
	5급 사서	30	-	30	-	-		5급 사서	31	-	31	-	-
	5급 보건	1	-	1	-	-		5급 보건	1	-	1	-	-
	5급 교육행정 또는 행정	10	-	4	-	6		5급 교육행정 또는 행정	10	-	4	-	6
	5급 교육행정 또는 사서	6	-	6	-	-		5급 교육행정 또는 사서	6	-	6	-	-
	5급 교육행정 또는 보건	8	-	3	3	2		5급 교육행정 또는 보건	8	-	3	3	2
	5급 교육행정 또는 시설	2	-	2	-	-		5급 교육행정 또는 시설	2	-	2	-	-
	5급 공업 또는 시설	20	-	9	11	-		5급 공업 또는 시설	20	-	9	11	-
	5급 교육행정·공업 또는 시설	6	-	-	-	6		5급 교육행정·공업 또는 시설	6	-	-	-	6
	5급 교육행정·보건 또는 식품위생	1	-	1	-	-		5급 교육행정·보건 또는 식품위생	1	-	1	-	-
	6급 소계	1,958	5	519	286	1,148		6급 소계	2,009	5	528	289	1,187
	6급 교육행정	1,252	5	222	162	863		6급 교육행정	1,283	5	229	165	884
	6급 전산	51	-	29	22	-		6급 전산	52	-	30	22	-
	6급 사서	131	-	120	11	-		6급 사서	130	-	119	11	-
	6급 공업	12	-	10	-	2		6급 공업	14	-	12	-	2
	6급 녹지	1	-	1	-	-		6급 녹지	1	-	1	-	-
	6급 보건	19	-	9	10	-		6급 보건	19	-	9	10	-
	6급 식품위생	6	-	4	-	2		6급 식품위생	6	-	4	-	2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구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	구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일반직	간호	5	-	5	-	-	일반직	간호	5	-	5	-	-
	시설	41	-	18	23	-		시설	42	-	19	23	-
	방송통신	1	-	1	-	-		방송통신	1	-	1	-	-
	시설관리	287	-	43	11	233		시설관리	305	-	43	11	251
	운전	5	-	2	-	3		운전	5	-	2	-	3
	통신운영	1	-	1	-	-		통신운영	1	-	1	-	-
	전기운영	10	-	4	-	6		전기운영	10	-	4	-	6
	열관리운영	22	-	12	-	10		열관리운영	21	-	11	-	10
	사무운영	61	-	24	12	25		사무운영	61	-	24	12	25
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3	-	3	-	-	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3	-	3	-	-
	교육행정 또는 전산	-	-	-	-	-		교육행정 또는 전산	-	-	-	-	-
	교육행정 또는 보건	1	-	-	-	1		교육행정 또는 보건	1	-	-	-	1
	방호 또는 시설관리	3	-	3	-	-		방호 또는 시설관리	3	-	3	-	-
	공업 또는 시설	30	-	4	26	-		공업 또는 시설	30	-	4	26	-
	보건 또는 식품위생	3	-	3	-	-		보건 또는 식품위생	3	-	3	-	-
	교육행정·공업 또는 시설	3	-	-	-	3		교육행정·공업 또는 시설	3	-	-	-	3
	교육행정·보건 또는 식품위생	10	-	1	9	-		교육행정·보건 또는 식품위생	10	-	1	9	-
	소계	2,684	-	581	466	1,637		소계	2,692	-	586	469	1,637
	교육행정	1,638	-	255	322	1,061		교육행정	1,720	-	257	325	1,138
7급	전산	58	-	47	11	-	7급	전산	60	-	49	11	-
	사서	173	-	173	-	-		사서	173	-	173	-	-
	공업	20	-	8	12	-		공업	21	-	9	12	-
	녹지	1	-	1	-	-		녹지	1	-	1	-	-
	보건	31	-	17	14	-		보건	31	-	17	14	-
	간호	5	-	5	-	-		간호	5	-	5	-	-
	시설	49	-	20	29	-		시설	48	-	19	29	-
	시설관리	522	-	20	15	487		시설관리	514	-	21	15	478
	운전	12	-	3	6	3		운전	12	-	3	6	3
	통신운영	1	-	1	-	-		통신운영	1	-	1	-	-
	전기운영	-	-	-	-	-		전기운영	-	-	-	-	-
	열관리운영	-	-	-	-	-		열관리운영	-	-	-	-	-
	사무운영	140	-	21	33	86		사무운영	72	-	21	33	18
	교육행정 또는 시설	1	-	1	-	-		교육행정 또는 시설	1	-	1	-	-
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1	-	1	-	-	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1	-	1	-	-
	공업 또는 시설	18	-	3	15	-		공업 또는 시설	18	-	3	15	-
	보건 또는 식품위생	2	-	2	-	-		보건 또는 식품위생	2	-	2	-	-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구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	구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일반직	방호 또는 시설관리	4	-	2	2	-	방호 또는 시설관리	4	-	2	2	-	-
		8	-	1	7	-		8	-	1	7	-	-
	소계	2,060	-	230	222	1,608	소계	2,000	-	231	222	1,547	-
	교육행정	1,289	-	67	118	1,104		교육행정	1,273	-	67	118	1,088
	전산	24	-	13	11	-	전산	24	-	13	11	-	-
	사서	85	-	85	-	-	사서	85	-	85	-	-	-
	공업	14	-	2	12	-	공업	14	-	2	12	-	-
	보건	21	-	4	17	-	보건	22	-	5	17	-	-
	시설	50	-	8	42	-	시설	50	-	8	42	-	-
	시설관리	547	-	43	6	498	시설관리	502	-	43	6	453	-
	운전	12	-	1	5	6	운전	12	-	1	5	6	-
	전기운영	-	-	-	-	-	전기운영	-	-	-	-	-	-
	열관리운영	-	-	-	-	-	열관리운영	-	-	-	-	-	-
	사무운영	1	-	1	-	-	사무운영	1	-	1	-	-	-
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5	-	5	-	-	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	5	-	5	-	-	-
	공업 또는 시설	11	-	-	11	-	공업 또는 시설	11	-	-	11	-	-
	보건 또는 간호	1	-	1	-	-	보건 또는 간호	1	-	1	-	-	-
	방호 또는 시설관리	-	-	-	-	-	방호 또는 시설관리	-	-	-	-	-	-
	소계	-	-	-	-	-	소계	-	-	-	-	-	-
	시설관리	-	-	-	-	-	시설관리	-	-	-	-	-	-
	운전	-	-	-	-	-	운전	-	-	-	-	-	-
	전기운영	-	-	-	-	-	전기운영	-	-	-	-	-	-
	열관리운영	-	-	-	-	-	열관리운영	-	-	-	-	-	-
	사무운영	-	-	-	-	-	사무운영	-	-	-	-	-	-
	방호 또는 시설관리	-	-	-	-	-	방호 또는 시설관리	-	-	-	-	-	-
	소계	7	-	7	-	-	소계	7	-	7	-	-	-
	가군	1	-	1	-	-	가군	1	-	1	-	-	-
	비상계획관	1	-	1	-	-	비상계획관	1	-	1	-	-	-
	나군	2	-	2	-	-	나군	2	-	2	-	-	-
	교육영상물 제작PD	1	-	1	-	-	교육영상물 제작PD	1	-	1	-	-	-
	평생교육사	-	-	-	-	-	평생교육사	-	-	-	-	-	-
	학생수련지도사	1	-	1	-	-	학생수련지도사	1	-	1	-	-	-
	다군	4	-	4	-	-	다군	4	-	4	-	-	-
	속기사	-	-	-	-	-	속기사	-	-	-	-	-	-
	학생수련지도사	4	-	4	-	-	학생수련지도사	4	-	4	-	-	-

현행								개정안									
구분	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	구분	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		
연구사	소계		14	-	3	11	-	연구사	소계		14	-	3	11	-		
	학예연구		1	-	1	-	-		연구사	학예연구		1	-	1	-	-	
	기록연구		13	-	2	11	-			연구사	기록연구		13	-	2	11	-
별정직	별정직 계		8	-	8	-	-	별정직			별정직 계		8	-	8	-	-
	4급상당(비서)		1	-	1	-	-		별정직		4급상당(비서)		1	-	1	-	-
	5급상당(비서)		4	-	4	-	-			별정직	5급상당(비서)		4	-	4	-	-
	6급상당(비서)		3	-	3	-	-				별정직	6급상당(비서)		3	-	3	-
특정직	특정직 계		588	-	273	315	-	특정직				특정직 계		588	-	273	315
	장학관 · 교육 연구관	소계	125	-	69	56	-		장학관 · 교육 연구관			소계	125	-	69	56	-
		3급 상당	17	-	6	11	-			장학관 · 교육 연구관		3급 상당	17	-	6	11	-
		4급 상당	34	-	23	11	-				장학관 · 교육 연구관	4급 상당	34	-	23	11	-
		5급 상당	74	-	40	34	-					장학관 · 교육 연구관	5급 상당	74	-	40	34
	장학사 · 교육 연구사		463	-	204	259	-		장학사 · 교육 연구사				장학사 · 교육 연구사		463	-	204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

성 명: (인) (단체인 경우) 단체명: 대표자 성명:
주 소: 전화번호:

개정안	수정요구안	사 유
제2조(직급별정원) ① [별표]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제2조(직급별정원) ① [별표]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○ -

2024년 월 일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